인 증 안 내 서

1 인증 심사 절차

1. 인증심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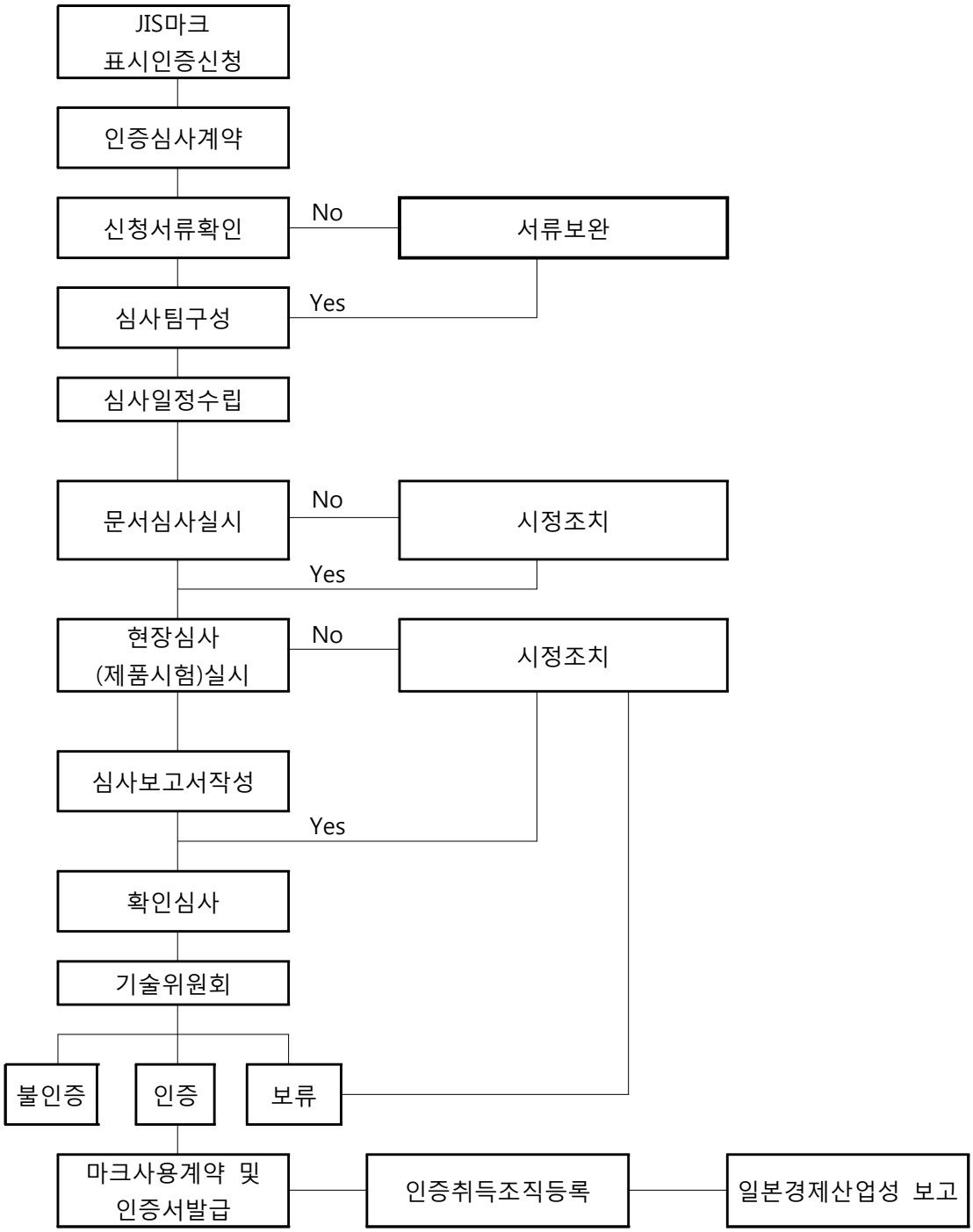

2. 단계별 추진내용

1) 인증 신청 및 계약

JIS마크 표시 인증이 필요한 고객은 JIS마크 인증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비와 함께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협회의 인증 심사 제안을 신청업체가 인증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2) 심사팀 구성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표준협회는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 업체에 통보합니다. 신청 업체의 의견은 심사팀 구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심사계획 작성 및 통보

심사팀 구성이 완료되면, 해당 심사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계획을 작성하고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차별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증 신청에서 현지심사 시행까지의 기한을 6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업체와 협회는 협의를 통해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인증심사 수행

① 문서 심사

현장심사 전 신청 서류가 해당 JIS규격, 심사 기준, 일본공업규격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성령 및 사내규격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현장 심사

심사팀은 신청 업체가 제출한 문서와 시행 기록이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신청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 완료 후, 심사팀장은 부적합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신청 업체에 제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하며 만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확인 심사

신청 업체가 제출한 개선완료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확인 심사는 개선완료보고서에 대한 문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구성되며 부적합사항의 내용이 문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인 경우 현장 확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심사 시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인 심사 일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시 치명적 결함이나 인증업무규정 위반인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행

확인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체를 기술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소요기간

본 소요기간은 평균 소요시간을 예시한 것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소요시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입니다.

구분	신청 ~ 문서심사	문서심사 ~ 현장심사	현장심사 ~ 시험완료	검증심사 ~ 인증결정
평균소요시간	7일 ~ 30일	15일 ~ 30일	30일 ~ 45일	8일 ~ 35일

2 인증심사 일수 및 비용

1) 심사일수 적용기준 (단위: M/D)

①최초심사

구분	기본			옵션 1		옵션 2		FULL 옵션
	기본 심사			시험소 추가		통역으로 심사 시		
심사종류	문서 심사	현장 심사	총 일수	시험소 심사	총 일수 (기본+옵션1)	추가 일수	총 일수 (기본+옵션2)	총 일수 (기본+옵션1,2)
1개 규격	2	4	6	1	7	1	7	8
2개 규격	2	5	7	1	8	1	8	9
3개 규격	2	6	8	1	9	1	9	10
4개 이상	협의 결정(유사한 제품군이 추가되는 경우, 3개 규격에 준하여 실시)							

②인증유지심사

구분	기본			옵션 1		옵션 2		FULL 옵션
	기본 심사			시험소 추가		통역으로 심사 시		
심사종류	문서 심사	현장 심사	총 일수	시험소 심사	총 일수 (기본+옵션1)	추가 일수	총 일수 (기본+옵션2)	총 일수 (기본+옵션1,2)
1개 규격	1	4	5	1	6	1	6	7
2개 규격	1	5	6	1	7	1	7	8
3개 규격	1	6	7	1	8	1	8	9
4개 이상	협의 결정(유사한 제품군이 추가되는 경우, 3개 규격에 준하여 실시)							

2) 모든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는 공히 인증신청기업 또는 인증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시험을 자사의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심사하는 경우, 시험소 평가 1MD가 추가되며, 해당 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0.5MD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MD를 추가할 수 있다.
4)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심사할 경우, 1명 이상의 통역을 인증기업에서 제공해야 하며 심사일수도 상기 표와 같이 추가된다.
5) 제품시험비용은 제품시험기관(KCL, SGS, KTC 등)의 절차에 따르며 별도로 산정한다.
6) 심사비용
   ① 신청비 : 500,000원
   ② 심사비용 : 900,000원/MD
   ③ 출장비 : 표준협회 여비 규정 기준 산출
   ④ 제품시험 수수료 및 VAT 별도(시험기관에 납부)
   ⑤ 인증등록료 : 300,000원
   ⑥ 해외심사 시 이동MD로 심사원 1인당 1MD의 비용 추가(심사MD가 추가되는 것은 아님)